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09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1층(통인동)

대표자 정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피 고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1, 3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4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는 2008. 6. 30.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 유한회사(이하 '에듀21'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에듀21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에듀21은 2011. 2. 28. 신축기숙사(프런티어관, 증거들에 의하면 '프런티어관' 또는 '프론티어관'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프런티어관'으로 통칭한다) 및 부속물 일체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기부채납하고 2011. 3.부터 2031. 2.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정보(이하 별지 목록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정보'와 같이 부른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4 정보는 각각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은 기업의 응찰, 낙찰, 계약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공개 및 유출될 경우 공정경쟁을 통한 입찰, 낙찰, 계약업무 등을 방해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제2 정보 중 재무제표는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이외에도 건국대학교 총장,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제1, 3, 4 정보와 같은 명목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건국대학교 총장 및 연세대학교 총장은 그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실행예산은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첨부되는 자료이고, 운영계획서는 대학을 포함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기관 운영계획서이다. 따라서 피고 역시 이 사건 제1, 3, 4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3, 4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관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신축기숙사인 프런티어관은 에듀21이 건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에듀21이 그에 관한 이 사건 1, 3, 4 정보를 작성·보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가 아닌 다른 대학교가 이 사건 제1, 3, 4 정보와 같은 명목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 역시 이 사건 제1, 3, 4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공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그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그리고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제1, 3, 4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가 2008. 6. 30. 에듀21과 사이에 체결한 '에듀21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는 본 협약 체결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270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갑(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이 지원하는 건설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을(에듀 21)”은 자금차입을 통해 총사업비 270억원을 조달하도록 한다. 총사업비의 상세 항목은 별첨 1과 같다.
- ② 제1항의 총사업비는 인입을 위한 비용, 매설물 이전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제5장 기숙사 운영 및 관리

제27조(기숙사 시설의 관리)

- ② “을”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초안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해 1월 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확정계획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숙사비의 결정)

- ② “갑”과 “을”은 당해연도 기숙사비를 당해연도 1월말까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별첨 1

총 민간사업비

총민간투자비 항목별 금액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고
① 조사비	-	
② 설계비	-	학교에서 기지급함
③ 공사비	24,000,000	
④ 집기비품비	1,149,031	
⑤ 부대비	감리비	- 학교가 직접 부담할 예정
	법무자문비	7,700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비용
	사업성분석	27,500 회계법인 사업성분석 비용
	세무·기장수수료	10,000
	건설공사보험	67,200
	예정이익상실보험	67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40
⑥ 운영설비비	0	공사비에 포함됨
⑦ 제세공과금	45,000	하수 및 가스분담금 등

⑦ 영업준비금	50,000	창업비, 비품, 홍보, 행사비 등
⑧ 건설기간 이자	671,279	하나은행 6.59% 한국사학진흥재단 5.80%
⑨ SPC 운영비	40,000	
총 민간사업비	26,068,424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제1 정보는 기숙사 건설 공사의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 경비, 지점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점, ② 위 실시협약에는 기숙사 건립사업의 총사업비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집기비품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기간 이자, SPC 운영비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에듀21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기숙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초안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확정계획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매년 에듀21로부터 기숙사 운영에 관한 계획을 통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에듀21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와 협의하여 기숙사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기숙사비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숙사 운영 비용에 관한 자료 역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이 사건 제1 정보),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이 사건 제3 정보),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이 사건 제4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이유제시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는 어떠한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 3, 4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3, 4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가) 피고가 이 사건 제1, 3, 4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3, 4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그 처분사유로 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제1, 3, 4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3, 4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피고와 에듀21이 체결한 위 1의 가항 기재 실시협약 제58조에 따라 에듀21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실시협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를 구성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와 독립된 비공개 사유로서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 구합58185 판결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제4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이 사건 제4 정보는 '프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로서 프린티어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제1 내지 3 정보, 즉 '1. 프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를 포괄하는 내용의 정보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정보와 별도로 이 사건 제4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정보는 이 사건

제1 내지 3 정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은 취지의 정보는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1, 3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달리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3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4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4 정보는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그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4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은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의 정보로서 입찰계약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어서 입찰절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려대학교 프런티어관은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그 자체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이 공개된다고 하여 에듀21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정보와 같은 명목의 정보, 즉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등을 공개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부속 명세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앞서 공개된 재무제표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제2 정보의 부속 명세가 어떠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의 경우는 청구대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은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로서 입찰과 관련된 거래처, 그 거래금액과 내역 등이 공개되면 향후 다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을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프런티어관의 운영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사립학교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은 피고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현재 프런티어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영업 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속 명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정보와 같은 내용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5. 12. 7. 피고로부터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 기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안암학사관리운영팀' 방문하여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공개결정을 받고 그 무렵 재무제표와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다시 2016. 5. 27. 피고에게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 기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6. 6. 8. 피고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받고, 재무제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나머지 비공개결정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상법은 제477조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위 서류들에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하여, 재무제표의 범위에 대차대조표 등의 부속명세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88조에 의하면 부속명세서에는 유가증권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형 자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충당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 감각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

등이 있다)를 포함시키고 있고, 제448조에서 위 서류들을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와 같이 부속명세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재무제표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으면서 이 사건 소로써 공개를 구하는 부속 명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상법 제447조, 제448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구성하여 비치·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 중 다른 서류는 공개를 받았으나 부속명세서는 공개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제표의 개념에 포함되는 부속명세서와는 또 다른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이 법원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피고 쌍방에게 이 사건 제2 정보가 2015. 12. 7. 이미 공개되었다는 내용의 증거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제2 정보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는 이미 공개된 재무제표에 의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원고 주장의 부속 명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원고로부터는 공개된 재무제표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는 원고가 공개결정을 받아 다투지 않는 재무제표와의 관계에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대상정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부속 명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정별 원장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원고가 이 부분에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프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계정별 원장으로서, 그 문언상 실시협약 체결이 된 다음 그에 따라 프린티어관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내용을 담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조항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 법원의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 열람·심사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정별 원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정보 중 계정별 원장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법인세, 장기금융상품,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시설장치,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등의 각 계정과목에 관하여 날짜별로 적요란, 코드란, 거래처란, 차변란, 대변란, 잔액란에 각각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개의 거래가 알려지게 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계정별 원장에 관한 부분은,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는 이상,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유진현



판사 서법옥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유진현 陳
판사 

판사 이호동 이호동 李


열람용

별지

목 록

1.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4.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열람용